

#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4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9.  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·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규제의 완화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미코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사유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 삭제 (안 제8조)

## 3. 관련근거

- 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의 정비

## 4. 본 문 : 불 임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지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삭제)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